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◈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◈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

◈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	・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・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개선할 수 있는 사업
	성별영향평가사업	・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
권장	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・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및 주력사업 ・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, 양성평등, 성별,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

◈ 제외대상 :

○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◈ 성인지 예산서 성격 :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

※「지방재정법」제36조의2